

연구회 운영규정

제정 2008. 03. 31

개정 2014. 03. 21

개정 2015. 10. 16

개정 2016. 12. 08

개정 2017. 09. 08

개정 2020. 07. 03

개정 2020. 10. 14

개정 2025. 11. 12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 7장 및 정관시행세칙 제 6장에 의거, 연구회 운영에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회장의 선출) ① 학회장은 학회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당해 5월 중 전회원을 대상으로 차기 연구회장 후보접수를 공고하고, 6월 15일까지 연구회별 온라인투표를 통해 학회주관으로 차기 연구회장을 선출한다.

② 차기 연구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연구회 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접수한다.

③ 차기 연구회장은 소속 연구회 회원의 온라인투표자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 2명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한다.

④ 연구회장은 선출된 차기 연구회장을 당해 6월 20일까지 학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차기 연구회장은 연구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연구회장이 된다.

⑤ 차기 연구회장은 입후보가 없는 연구회는 학회장, 수석부회장, 연구계 부회장(연구회협의회 위원장) 및 해당 연구회장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회는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지할 경우에는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해당 연구회장이 소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장을 임면한다. 이 경우 그 결

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회의 운영진 구성) ① 연구회에는 총무1인과 감사1인을 두며 해당 연구회장이 소관 연구회의 총무와 감사를 임면한다

② 총무는 회무를 담당하고 연구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학술발표회 논문심사 및 세션구성) ① 연구회는 연구회장 주관 하에 춘계·추계 학술발표회에 제출된 논문 중 해당 연구회 소관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장은 제 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학술발표회의의 논문발표세션을 구성하고 좌장을 선정하여 학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 6 조 (포상추천 등) ① 연구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논문 심사 결과 우수 논문에 대하여 학회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제 1항의 우수논문상 후보 추천을 위하여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학회에 제출·비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한국원자력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에 기재된 업적에 대한 검증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증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원자력대상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7 조 (학술회 등의 개최 및 비용 총당 등) ① 연구회는 국내·국제 워크숍 또는 학술회의(이하 “학술회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학술회 등을 개최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총당하기 위하여 등록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등록비 등 금전의 수입, 지출은 학회명의로 은행계좌를 통하여 시행한다.

③ 학회는 국내 학술회 등의 경우 1백만원 이내, 국내유치 국제 학술회 등의 경우 5백만원 이내에서 준비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학술회 등 종료 후 우선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준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회장의 요청에 의거 학회 회장이 결정한다.

④ 연구회는 학술회 등 종료 후 제행사비용(학술회 등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정산하여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연구회는 학술회 등 정산 결과 잔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 수익금의 50% 이상을 학회에 조건 없이 납부·기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50% 미만은 학

회의 해당 연구회 계정에 예치하며, 6년 내에 연구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
되 6년차 말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학회가 흡수한다.

⑥ 연구회는 제 5항의 잔액(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단체나 국내외학술
회의 등에 기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연구회에 대한 학회 이외의 외부 단체 등의 기부금 등의 관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다른 학술회 등의 후원) ①학회의 외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국내외 분
야별 (Topical)학술회의에서 학회의 후원을 요청할 경우 학회 회장은 해당 연
구회장으로 하여금 후원요청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학회 회장이 해당 후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후원할 수 있다.

제 9 조 (보고) 연구회는 학술발표회 기간 중 전년도 활동결과보고서 및 당해
연도 활동계획서를 학회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보고회를 마친 후 1개월 내에
이를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에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차기 연구회장(연구회장 임기 :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을 2015년 11월 중에 선출하고 이후부터는 제2조 개정규정
에 따라 연구회장을 선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 (연구회장의 선출) 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연구회 (“원자력 열수력” 또는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방호” 또는 “방사선 이용 및 기기”)는 2017년 9월중 연구회장 후보접수를 공고하고, 온라인투표를 통해 연구회장을 선출하고, 2017년 10월 20일까지 학회장에게 추천한다. 연구회장의 임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하되, 차기 연구회장직(차기 연구회장 임기 : 2018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